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10. 8(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3.11. 12(화)
- 다. 상정일자 : 2013.11. 12(화)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 기존 봉안당 시설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안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연면적 660㎡, 5,000기 규모의 봉안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총사업비 1,159백만 원을 투자하여 평창군 공설묘지에 계획하고 있는 봉안당 신축사업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을 근거로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방림면 지역과 인근 평창읍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방림면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지역개발기금과 연간 장사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 평창읍은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④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비용추계에 의한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방림면은 2014년 10억 2015년도에는 10억과 사용료 100분의 12금액(연간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창읍은 2015년도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봉안당 신축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2일 신청한 국비확보 문제는 10월 29일 가내시된 상태로서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본 조례는 계속적으로 제기된 지역개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1부 . 끝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사시설"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②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면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2. 평창군 일반회계예산

② 평창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임·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 사회복지,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체육·주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평창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